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4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송기현 · 강득구 · 김남근  
김동아 · 김원이 · 김준혁  
노종면 · 박민규 · 박지원  
박찬대 · 박해철 · 송옥주  
송재봉 · 윤건영 · 윤종오  
이병진 · 이연희 · 이용우  
이원택 · 이재관 · 임미애  
전종덕 · 정준호 · 주철현  
최혁진 의원(25인)

### 제안이유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여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폐철도부지를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유휴부지가 활용되고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고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유휴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시장·군수 등은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5조).
- 마. 활용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승인 내용은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대부·사용하게 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20년 이

내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국가는 철도유류부지 활용사업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9  
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철도 관련 기관·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안 제10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고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 유휴부지”란 폐철도부지와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부지를 말한다.
  - 가.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 나.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 다.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잔여지
  -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부지
2. “폐철도부지”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철도부지를 말한다.
3.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하 ‘활용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

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철도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라 활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친화적 공간”이란 철도 유휴부지에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 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주민의 편의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공공의 공간을 말한다.

5. “지역 경쟁력 강화”란 철도 유휴부지를 교육, 문화, 관광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유휴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유휴부지의 위치 및 면적 등 현황조사
2.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3. 철도유휴부지의 주민친화적 공간 및 교육·문화·관광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활용 수요 조사
4. 철도유휴부지 활용 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5.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6. 대부, 매각 등 폐철도부지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등) ① 관할구역에 있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등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활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활용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철도유휴부지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장등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활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용사업의 명칭,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활용사업의 대상지역·위치 및 그 면적
3. 철도유휴부지 주변지역의 특성 및 토지이용현황과 개발계획 등  
여건 분석
4.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5. 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철도유휴부지의 이용방법
6.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7. 그 밖에 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활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이를 변경승인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활용사업계획의 승인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폐철도부지 대부 등) ① 국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대부·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철도부지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사용하게 하는 폐철도부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